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. 10. 27 선고 2021가단218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담당변호사 이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종원

피 고 A

소송대리인 B

변 론 종 결 2021. 9. 29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7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20. 2. 1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. 2. 19. 접수 제35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2018. 9. 20. 'B은 원고에게 92,994,315원 및 그 중 31,011,046원에 대하여 2018. 9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지급명령(부산동부지방법원 2018차전44225호)이 있었다. 위 지급명령은 2018. 10. 12. 확정되었다.

나. B은 2020. 2. 18.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한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. 2. 19. 접수 제3586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)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,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B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되 계약명의만 B으로 하였던 것이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피고의 주장은 일응 피고와 B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, 이 사건

증여계약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라는 취지로 보이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물론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6,500만 원 중 약 5,000만 원 가량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같은 날 마쳐진 C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0,4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무자가 B으로 기재되어 있는바, 매매대금 중 5,000만 원은 B이 대출을 받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. 이는 피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피고 주장과 배치된다).

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권은석